

# 보도자료

## (농림부)

- 제공일 : 2006. 12. 11.
- 제공자 : 농림부 농산경영과
- 과 장 : 박 종 서
- 서기관 : 박 상 민
- 전 화 : 500-1769

이 자료는 2006년 12월 12일 조간에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제목 : 농업기계화사업에 5년간 3조8천억원 투자

### < 요 지 >

- 농림부는 농업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,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6차 「농업기계화기본계획(2007~2011)」을 수립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.
  - 제6차 기본계획은 ‘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기계화기반 구축’을 위해 ①효율적인 농기계 이용·관리를 통한 비용절감, ②농업인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, ③인프라 구축 및 지자체의 농업기계화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수립되었다.
-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4개 분야 29개 과제를 선정, 향후 5년간(‘07~11) 총 3조 8천억원을 투자한다.
  - ① 농기계 비용절감 : 임대사업 확대 및 국고보조율 상향, 들녘별 주요 농기계 적정공급, 경제형농기계 개발보급, 농업용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등
  - ② 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 : 고품질 쌀, 콩, 우수브랜드 육성 품목(고추, 마늘 등) 중심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농기계 개발보급
  - ③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 : 농기계 안전인증제 도입 시험평가제도 개선, 농기계공제 가입지원 확대 등
  - ④ 인프라 구축 : 주요농기계 가격표시제 도입, 부품확보·생산자금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, 에너지 절감기술개발, 지자체 기계화사업 지원 등

□ 농림부는 여건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제5차 「농업기계화기본계획」을 수립하여,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.

○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5조에 근거, 농업기계화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1980년부터 5년단위로 수립해 왔으며, 현재는 제5차 기본계획을 시행중에 있다

□ 농업기계화사업의 추진으로 그동안 ①벼농사 일관기계화 달성, ② 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, ③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등의 분야에서는 큰 진전을 이루었으나,

○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, 발작물용 기계화 개발·실용화 및 안전 관리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었다.

i) '04년 말 벼농사 주요 농작업의 기계화율은 90% 수준 달성

ii) 농기계 구입자금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농업종합자금제('03), 대형농기계 용자상한제('05) 등을 도입

iii) 중고농기계 상설판매장 설치(20개소),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('03)등으로 구입 부담 경감과 이용율 제고

iv) A/S 종합평가제 실시 및 부품확보자금 지원 등으로 수리불편 해소

□ 이에 따라 농림부는 제6차 기본계획의 주요목표를 ①효율적인 농기계 이용·관리로 비용절감 ②농업인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③인프라 구축 및 지자체의 농업기계화사업 지원으로 정하고,

○ 이를 실천하기 위한 추진전략 으로 4개 분야, 29개 과제를 선정 하여 이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.

## < 분야별 주요 추진전략 및 과제 >

### ① 농기계 비용절감

- 임대사업 확대 및 국고보조율 상향, 들녘별 주요 농기계 적정공급, 경제형농기계 개발보급, 농업용면세유 공급기한 연장등 10개 과제

### ② 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

- 고품질 쌀, 콩, 우수브랜드 육성품목(고추, 마늘 등) 중심으로 수요자가 원하는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

### ③ 농기계 안전관리 강화

- 농기계 안전인증제 도입 시험평가제도 개선, 농기계공제 가입지원 확대 등 6개 과제

### ④ 인프라 구축

- 주요농기계 가격표시제 도입, 공급제도 개선, 부품확보·생산자금 확대 및 지원조건 개선, 에너지 절감기술개발, 지자체 기계화사업 지원등 11개 과제

□ 농림부는 제6차 기본계획의 시행기간인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3조 8천억원 수준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.

- 농기계 구입·생산지원(종합자금), 공제가입 : 2조 6천5백억
- 임대사업 활성화 : 995억(320개소 설치)
- 브랜드육성 기계화·자동화 : 1조원
- 연구개발 및 교육(농공연·한농전) : 275억원

## 농업기계화사업 주요목표 및 추진전략

비  
전

안전하고 경쟁력 있는 기계화기반 구축

주  
요  
목  
표

- ◆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·관리로 비용 절감
- ◆ 농업인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
- ◆ 인프라 구축 및 지자체 기계화사업 지원
  - 농기계시장 양극화, 개방확대, 농정전환 등 여건변화 사전대비

추  
진  
전  
략

비용 절감	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	안전관리 강화	인프라 구축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임대사업 확대</li> <li>○ 들녘별 적정공급 유도(벼농사용)</li> <li>○ 경제형 농기계 보급 촉진</li> <li>○ 주요 농작업의 공동화(방제 등)</li> <li>○ 면세유 지속공급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고품질 쌀생산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벼 대체 작목용</li> </ul> </li> <li>○ 고추, 마늘 등 브랜드 육성품목 일관기계화 촉진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기계화모델 제시</li> <li>- 수확후 처리 기계화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안전인증제 도입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트랙터, 예취기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농작업 안전위원회 설치운영</li> <li>○ 시험평가제도 개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안전성, 쾌적성 중심</li> <li>- 업체 자체시험성적 인정(성능 분야)</li> </ul> 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공급제도 개선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가격표시제 도입 등</li> </ul> </li> <li>○ 업체의 책임 강화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무상수리기간 연장</li> </ul> </li> <li>○ 지자체 사업 지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농촌 활성화 및 환경보호</li> </ul> </li> </ul>

실  
천  
수  
단

- ◆ 효율적인 자금지원, 규제완화, 지속적인 제도개선

<붙임 2>

## 년도별 세부추진계획 주요내용

### 1] 기존사업 활성화 : 6개

- ① 임대사업 확대 및 국고보조율 상향(현재 : 50%→ '08 부터: 70%)  
- “사업운영안내서” 보급, 브랜드·특화작목 일관기계화 우선지원등 효율성 제고
- ② 부품확보·생산자금 지원제도 개선(중소업체 지원확대 등)
- ③ 국제박람회 참가비 지속지원 등

### 2] 신규사업 : 11개

'07년	'08년	'09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작업 안전위원회 설치(농공연)</li> <li>- 안전사고 향상 장단기 대책 수립 등 추진</li> <li>○에너지소비율 등급표시</li> <li>- ('07)농업용난방기 → ( '08~'09) 농산물건조기</li> <li>- 우수기종 우대지원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기계 가격표시제</li> <li>- 트랙터, 이앙기 등</li> <li>- 업체 자율로 가격표시</li> <li>○벼농사용 주요농기계 적정공급 유도(들녘별)</li> <li>- 종자통일, 재배관리 표준화와 연계 공동이용 촉진</li> <li>- 공동이용 시 임대사업으로 농기계 지원 (농협RPC 등)</li> <li>○ 지원대상 기종 선정시 제조 업체 성능시험성적도 인정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농기계 안전인증제 (촉진법 개정)</li> <li>- 트랙터, 예취기 등</li> <li>○중고농기계 품질보증제</li> <li>- 판매후 일정기간 품질 보증</li> </ul>

### 3] 제도개선 : 12개

'07년	'08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및 홍보강화</li> <li>○경제형농기계 개발보급 촉진</li> <li>○농업인재해공제 가입지원 확대</li> <li>○무상수리기간 자율연장 유도</li> <li>- 생산자금 우대지원 등</li> <li>○지자체 기계화사업 지도강화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농기계 시험평가 제도개선</li> <li>- 검사·검정제도 일원화</li> <li>- 성능 → 안전성, 쾌적성 중심</li> </ul>